

통상전략팀 현안조사

WTO 분쟁해결 절차의 문제점과 우리의 대응방안

2003. 6.

K O T R A

목 차

I . WTO 분쟁해결 현황	3
II . WTO 분쟁해결상의 문제점	7
III . WTO DDA 분쟁해결 협상 동향	12
IV . WTO 분쟁해결의 운영에 대한 평가	13
IV . 우리의 대응 방안	15
첨부 : 1. 미 - EU 분쟁사례	
2. 미 · EU 협상제안서	

1. WTO 분쟁해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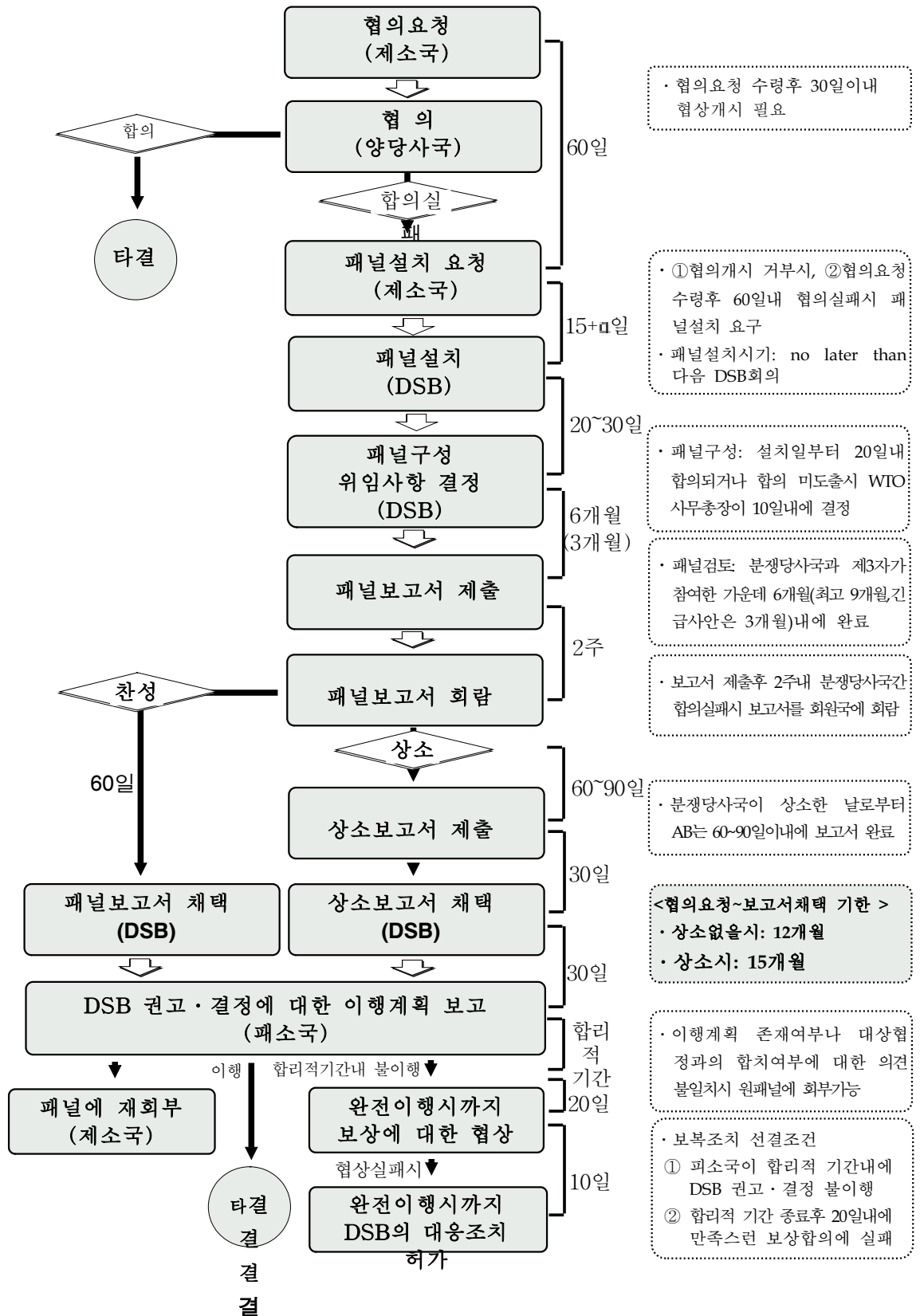
가. 분쟁해결 절차 개요

- WTO 분쟁해결절차는 국제경제질서에 준사법적 기능을 도입한 것으로 UR협상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받고 있음.
- 특히 GATT체제하에서는 패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제소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패널의 결정이 실질적으로 강제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였음.
- 그러나, WTO 분쟁해결절차하에서는 패널 및 상소기구의 채택 절차가 DSB(Dispute Settlement Body) 회원 전원이 채택을 거부하지 않는 경우 반자동적으로 채택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필요없는 거부권 행사를 방지하고 있음.

(Reverse Consensus 도입)

- 또한 WTO 분쟁해결제도하에서는 상설 상소기구를 운영하여 패널의 보고서에 법적인 문제점이 있는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947 GATT체제보다는 법적인 안정성을 제고시키고 있음.
- 이외에도 WTO 분쟁해결제도는 모든 절차에 엄격한 시한을 설정하여 국제법상 유례가 없는 분쟁 해결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있음.
- 이러한 분쟁해결절차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패널이나 상소기구에서 채택된 보고서의 권고사항이나 판결이 미이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분쟁해결 절차의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음.

WTO 분쟁해결 절차



나. 분쟁해결절차 운영 현황

- GATT체제하에서는 지난 47년간(1948-1994년) 제소 건수가 200건에 불과하여 연간 평균 제소건수가 5건에 불과함.
- 그러나, WTO 체제하에서는 지난 8년간 (1994-2002년) WTO에 약 300건의 제소가 이루어져 연간 35건에 달하는 제소 건수를 기록하였음.
- 국별로는 미국이 66건, EU가 58건으로 전체 제소 건수의 24% 및 21%를 차지하여, 경제규모가 큰 국가 위주로 제소 건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이외에도 WTO 분쟁해결 체제하에서는 개도국들의 제소 건수가 105건으로 전체 제소건수의 약 38%를 차지하여 개도국들의 제소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 한편, 제소된 사안에 대한 해결방식을 살펴보면 2003년 4월말 현재 제소 건수 290건중 패널 및 상소기구의 보고서가 채택된 건수가 70건으로 전체 제소중 31%에 달하고 있음.
- 그러나 분쟁 당사국간에 의한 분쟁해결은 14%에 불과해 DSU(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제 23조가 규정하고 있는 무역분쟁의 다자간 해결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연도별 WTO 제소현황

단위 : 건

연도별	EU	미국	일본	개도국	미-EU	계
1995	2	5	1	9	1	22
1996	7	15	3	15	5	42
1997	15	17	1	8	5	46
1998	16	10	1	10	7	44
1999	7	9	2	8	6	31
2000	7	8	0	14	5	30
2001	1	1	0	23	1	27
2002	3	1	2	18	2	34
누계	58	66	10	105	33	276

자료원: HWWA

주) WTO 통계를 HWWA 경제연구소가 재분류

WTO 제소 처리 현황

단위 : 건

제소 ⁽¹⁾	보고서 채택 ^(2,3)	당사국간 해결	기타 ⁽⁴⁾
290	70	40	24

자료원: WTO사무국

주1) 통계치는 1995. 1. 1부터 WTO사무국에 통보된 수치를 기준

주2) WTO사무국에 통보된 건수로 패널(상소기구)재검절차도 포함

주3) DSU 21조 5항에 의한 보고서는 제외

주4) 패널의 보고서가 채택되기 이전에 문제된 조치가 철회된 경우

2. WTO 분쟁해결상의 문제점

가. 개요

- WTO 분쟁해결 절차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지난 8년간 분쟁해결 절차를 운영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음.
- 문제점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DSB에서 채택된 패널 및 상소기구의 권고 및 판결이 미이행되고 있다는 사실임.
- 현행 DSU규정에 따르면 패소국은 패널 및 상소기구의 권고나 결정사항에 따라 WTO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를 WTO 규정에 일치시켜야 함.

- 승소국은 패소국이 취한 조치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경우 DSU 제 21조 5항에 따라 해당 조치의 WTO 규정과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패널을 설치하거나 DSU 제 22조 6항에 따른 무역 보복조치 절차를 밟을 수 있음.
- 이 과정에서 DSU 제21조 5항과 제 22조 6항간의 순서문제가 분쟁해결의 주요 이슈로 부상되고 있음.

나. DSU 제 21조 5항과 22조 6항간의 순서문제(Sequencing)

- 패널 및 상소기구의 권고 및 판결에 대해 패소국이 이 사항을 미이행하는 경우 승소국은 DSU 제 21조 5항에 따라 패소국이 취한 조치가 권고나 판결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음.

☞ 현재 이 중재패널에 대한 상소여부는 DSU규정상 명백하지 않음.

- 다른 방법으로 승소국은 DSU 제 22조 6항에 따라 자국의 양허 및 의무사항을 정지하는 방법 등으로 무역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DSB에 권한 부여를 요청할 수 있음.
- 이에 대해, 미국은 제 21조 5항과는 별도로 제 22조 6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패널도 이를 인정하는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음.
-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과 같은 입장을 지지하는 것은 WTO 분쟁해결절차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WTO 분쟁해결 절차를 유명무실화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입장임.

- 현행 DSU에는 양 조항간의 순서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승소국이 어느 규정을 먼저 준수해야 하는지가 명백하지 않음.
- 단, 분쟁해결절차의 운영 경험상 DSU 제 21조 5항이 우선하며 이후에 DSU 제 22조 6항에 따른 보복조치를 취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가고 있음.

다. DSU 무역보복조치상의 문제점

- 패소한 회원국의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패널이나 상소기구의 권고사항이나 판결을 이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DSU는 승소국이 패소국에 대해 무역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을 마련해 놓고 있음.
- 이로 인해 미국과 EU와 같은 강대국들은 자국의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권고사항이나 판결의 이행을 시행하지 않고 무역보복조치를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사례는 세계경제의 양대축인 미국과 EU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이 문제점이 지속되는 경우 무역전쟁으로 비화되거나 WTO 분쟁해결절차가 붕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패널 및 상소기구의 보고서 채택에도 불구하고, FSC(Foreign Sales Corporation) 분쟁, 호르몬 분쟁 등은 여전히 미해결된 상태여서 양국간 무역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음.

- 특히, 이러한 미이행 사례는 강대국들이 자국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경제질서의 핵심인 분쟁해결절차의 결정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와 약소국들에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는 실정임

미 - EU간 문제사례별 특징

사례별	주요 특징
○ 바나나분쟁	- 식민지시대의 정치적 특수성을 고려 - 양자간 협약을 통해 미이행 문제해결
○ 호르몬 분쟁	- 소비자보호를 이유로 미이행 - 사전보호차원의 조치를 오히려 강화 - 1억 1,700만달러의 무역보복조치 시행
○ FSC 분쟁	- 수출기업 보호차원 - 40억달러의 무역보복조치 인정 - 보복조치금액의 과다로 분쟁의 불씨

라. 무역보복조치와 보상의 문제점

- 기본적으로 DSU는 보상이나 무역보복조치는 일시적인 조치로 보고 있으며 WTO 규정에 부합시키는 것이 DSU가 추구하는 목표로 삼고 있음.
- 특히, 무역보복조치는 분쟁 당사국간에만 적용되어 다자간 무역 자유화를 추진하는 WTO체제에도 부합되지 않음.

- 또한, 무역보복조치는 경제적인 강대국에 유리하지만 약소국에는 불리함.

마. 미이행에 따른 문제점

- 미 - EU간의 분쟁에서 파생된 문제점에 대해 해당분야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분분함.
- 이 사건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미이행이 오히려 분쟁 당사국간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정치적인 해결이 필요한 분야를 바람직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임.
(WTO 체제의 유연성을 강조)
- 반면에, 반대입장에서는 WTO의 권고사항을 미이행함으로써 WTO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분쟁해결 방식이 의미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고, 또한 빈번한 무역보복으로 WTO 체제가 구축한 다자간 체제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무역전쟁 가능성 경고)
- 현재 WTO에 제소된 EU-미국간의 철강분쟁, 미-EU간의 GMO사건의 패널 및 상소기구의 판결과 이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여부가 앞으로 WTO 분쟁해결기구의 해결에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임.

☞ GMO : 유전자변형 농산물 · 식품

- EU는 GMO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99년부터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음.

3. WTO DDA 분쟁해결협상 동향

가. 개요

- 1995년 WTO 출범 당시 4년 이내 DSU 협정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토록 한 규정에 따라 1998년부터 DSU 재검토 작업을 시작하였으나 현재까지 미합의된 상태
- 2001년 도하 각료회의에서 기존 작업 및 회원국의 추가 제안에 기초하여 DSU 개선 및 명료화를 위한 협상 개시를 규정하고 협상은 2003년 5월 이전에 종료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미종료된 상태임.
- 현재 회원국들간의 주요 쟁점으로는 이행 및 보복조치에 적용되는 규정의 명확화, 분쟁해결절차의 신속화, 패널과정의 공개 등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의 협상참가국들은 현행 분쟁해결 제도의 전반적인 개정이 아닌 부분적인 절차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반면, EU는 패키지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도 개도국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는 분쟁해결 절차상의 투명성 강화, 패널 및 상소기구 심의과정에서의 유연성 제고를 자국의 협상주요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외교통상부)

4. WTO 분쟁해결의 운영에 대한 평가

가. WTO 분쟁해결기구의 권한에 대한 불신 증폭

- FSC사건의 경우 미국은 WTO 분쟁해결기구가 DSU에 규정된 범위를 넘어 미국의 국가주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임. 특히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일부 상원의원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
- 특히 FSC 사건의 경우 보복의 미이행에 따른 무역 보복의 한도가 약 미화 40억달러에 달해 보복이 현실화되는 경우 통상전쟁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대두되고 있음.
- 그러나, 일부에서는 오히려 보복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양국이 보복을 통한 해결보다는 바나나 사건에서와 같이 양국간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설득력을 보이고 있음.
- 실질적으로 세계교역의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EU의 무역분쟁이 현실화되는 경우 WTO체제의 안정성 확보에 문제점이 노출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세계교역질서를 형성하게 됨.
- 따라서, 미국과 EU 등은 무역보복 수단보다는 협상이라는 틀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됨.

나. 보복조치에 따른 업체들의 높은 경제적 부담

- 현 DSU 체제하에서는 일정 조건하에서 승소국이 패소국에 대해 일방적인 교차보복을 허용하고 있음.
- 이로 인해 분쟁과 관련이 없는 업체들도 교차보복에 의해 피해를 입는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약소국이나 빈소국들은 강대국들보다 보복조치에 더욱 타격을 받게되며 이로 인해 교역이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함.
- 이러한 사례는 미 - EC 바나나 사건에서 보인 미국의 보복조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이 분쟁과 관련 미국이 도입한 Carousel 조항은 무역 보복조치에 허용되는 품목을 가변시킴으로써 수출시장 질서에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점을 남겼음.
- 한편, 호르몬 사건에서 EU는 패소한 이후에도 호르몬 금지규정을 개정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미이행에 따른 보복 조치 및 보상조치도 DSU의 일부분이라고 강변하고 있음.
- 또한 EU는 사전예방원칙 및 소비자보호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무역마찰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음.

5. 우리의 대응방안

가. 다자협약하에서 분쟁해결 견지

- 우리나라와 같이 전형적으로 경제가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는 교역과정에 항상 무역마찰의 소지를 안고 있음. 따라서 무역분쟁의 해결에 있어 양자간 해결보다는 다자간의 틀안에서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미국의 통상법 301조와 같은 일방적 무역 보복조치는 경제력이 약한 약소국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제도임.
- 이 제도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존재 자체만으로도 **Chilling Effect**를 미칠 수 있다고 판정한 WTO 패널 보고서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DSU 제 23조가 규정하고 있는 무역분쟁의 다자간 해결을 통해 WTO체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력해야 함.(DSU 제 3조 2항)

나. 미이행에 따른 구체적인 해결방안 협상 필요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패소국의 미이행을 빌미로 무역보복 조치를 허용하는 제도는 세계교역질서가 추진하는 자유무역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분쟁해결방식으로 무역보복 조치는 분쟁 당사국간에만 영향을 미치고 다른 회원국들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관계로 세계 교역을 통한 후생의 증가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또한 교차보복의 경우 분쟁과는 상관없는 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승소국 및 패소국의 산업전반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됨.
- 따라서, 강대국과 약소국의 이익을 동시에 보장하고 세계교역 질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이행에 따른 보복조치보다는 구체적인 보상에 중점을 두는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분쟁의 원활한 해결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

다. WTO 분쟁해결기구 판결 미소급에 따른 문제점 파악

- DSU에 의한 분쟁해결은 분쟁해결전의 사안에 대해서 소급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분쟁절차가 신속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제소국의 교역이익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됨.
- 강대국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무시하고 일부 사건에서는 이행을 지연시킬 개연성이 있어, 정작 분쟁이 해결된 시점에서는 해당 산업이 이미 퇴출되어 분쟁해결이 의미를 상실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음.
- 따라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하이닉스 반도체의 미국 및 EU의 상계관세조치에 대한 WTO의 제소도 분쟁해결의 승소여부와 상관없이 국내산업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음.

☞ 시간상의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해당국가의 국내법에 의한 구제방법을 강구하고 사후에 WTO에 제소하는 것도 한 방법임.

- 따라서, 협상시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해결이 아닌 관련 산업에 최소한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라. 판결에 따른 파장 최소화 노력 필요

- 또한, DSU상에는 제소국의 제소 시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제소국이 피제소국의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 항상 제소를 할 수 있음.
- 이로 인해, 이 조치가 WTO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 다른 회원국들도 제소가 가능하게 되어 그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이를 감안하여 패널 및 상소기구는 정치·경제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런 자세로 임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제소시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첨부] I. 미 - EU간 주요 분쟁사례

사례 1: FSC Case

□ 성장 호르몬 사용에 대한 미-EC의 의견대립이 문제

- 성장 호르몬의 사용에 대한 부작용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EC측은 성장 호르몬제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입안하여 공포(1989년)
- 미국은 동 조치가 GATT의 규정에 위배되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주장하면서 동 조치의 문제점을 제기
- GATT 체제하에서는 EC의 거부권행사로 동 분쟁에 대한 해결이 이루어지 못하자 미국은 일방적 보복으로 동 문제에 대응

□ WTO 분쟁절차에서 EC가 패소

- EC는 패널과 상소기구에서 패소하였으며 패널 및 상소기구가 지정한 이행시기 종료일까지도 동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지 않고 있음.

□ 미국의 보복조치 시행

- EC가 일방적 이행시기를 위반하고, 양국간의 보상협상도 실패로 끝나자 미국은 EC에 대해 1억 1,700만 달러의 무역보복조치를 시행

사례 2 : Hormon Case

□ 1971년 DISC 규정이 FSC 사건의 발단

- DISC 규정은 수출에 대한 세제 혜택을 규정
- EC의 제소에 미국도 EC 회원국의 세제에 대해 맞제소로 대응
- 양국의 제도가 GATT에 위배된다고 패널이 판정(1976년)
- 영토외 발생소득에 대한 과세는 제외기로 합의(1981년)
- 미, DISC를 FSC로 개정 (1984년)

□ EC, WTO체제에서 미국의 FSC 조항에 대해 제소

- 미국의 1984년도 FSC규정에 대해 EC는 1997년도까지 대응자체
- 패널 및 상소기구는 EC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결정

□ EC 및 미국, 이행 패널 설치에 합의

- 상소 및 패널에 패소한 후 미국이 자체 규정을 개정
- EC는 이 개정이 미미하다고 주장하고 40억달러의 보복 허용을 요구
- 그러나 양국은 새로운 이행 패널 설치에 합의하였으며 역시 패널 및 상소에서 미국의 규정이 WTO 보조금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정

사례 3 : Banana Case

□ EC, 바나나 수입관련 규정 도입 (1993년)

- 관세 쿼터제도 도입 및 ACP 국가에 대한 특혜규정이 주된 내용
- 이 제도로 남미 국가들에 의해 GATT제소되었으나 EC 및 ACP국가의 거부권 행사로 실패 (제1차 분쟁)
- 1994년도에도 제1차 실패와 같은 현상이 반복
- UR 타결후 DSU체제하에서 EU가 제소되어 패소 (1997년 9월 25일 상소보고서 채택)
- EC는 합리적인 이행시기에 대해협상을 요구
- 조정에 의해 판결을 이행하기로 결정
- EC는 바나나 규정에 대해 일부 수정하는 수준에서 종결을 희망했으나 제소국을 만족시키는 데는 실패
- 이에 따라 DSU조 21.5항과 22조간의 관계, 즉 통상 보복권의 시점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됨
- EC는 신규로 분쟁절차에 의한 해결을 희망했으나 미국은 보복 강행을 위협하며 관세양허 정지를 요구
- 그러나 미국의 요구가 수용되지 못하자 미국은 자체적으로 보복조치를 시행
- 미국의 이 조치에 대해 EC는 제소로 맞대응

- 이후 조정에 의해 당초 미국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적정보복 수준 결정
- EC의 상소 포기후 미국은 1억 1,900만 달러에 달하는 관세보복 조치 시행
- 미국은 보복 품목 변동조항을 채택하여 EC에 대한 압력 강화 (2000년 5월)

□ 미국과 EC의 쌍무협정 체결 (2001년 4월 11일)

- EC는 시행중인 EC 바나나 규정을 개정하여 2006.1.1로 관세만 적용하기로 했으며 이 협정에 따라 미국도 2001. 7. 1로 보복조치 중단

II. 미국 제안서

일 자 별	제 안 내 용	비 고
1차 제안서	○ 공개회의 요구 - 패널, 상소기구, 중재회의의 공개 요구 (단, 비공개 정보시는 제외) ○ 제소장의 공개 - 패널, 상소기구, 중재 당사자들의 소장 및 구두진술 공개 ○ 최종 보고서의 공개 - 최종 보고서를 회원국 및 일반에게 적시에 공개 ○ 비정부 기구의 의견제시 - 패널 및 상소기구에 비정부 기구의 의견진술 허용	EU 제안
2차 제안서	○ 상소기구의 중간보고서 제출 - 중간 보고서중 당사자들이 분쟁 해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내용은 보고서에서 삭제 ○ 패널 보고서의 부분채택 허용 ○ 패널 및 상소기구의 진행 일시정지 -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결정	칠레와 공동제안

일 자 별	제 안 내 용	비 고
2차	○ WTO 패널 및 상소기구의 업무 지침규정 - 업무성격 및 범위규정 공개요구 - WTO규정의 해석규범 등	
3차	○ 제1차 제안내용의 구체화 - 1차 제안서에 제안한 내용을 DSU 조항별로 구체화하여 해당 조항별 수정안 제시	

III. EU 제안서

일 자 별	제 안 내 용	비 고
1차 및 2차 제안서	☐ 패널 상설화 - 패널절차의 합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명부에 의해 운영되는 패널제도를 상소기구와 유사한 상설기구로 운영 ☐ 권고 및 판정 미이행 관련 사항 ○ DSU관련 규정간 관계정립 - DSU 제 21조 5항에 의한 이행패널에 상소권 인정	

일 자 별	주 요 제 안	비 고
	○ 미이행에 따른 보상 관련 사항 - 교역을 왜곡하는 양허철회보다 교역을 증진하는 보상제도 선호 - 권고의 신속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관세 양허철회 이전에 독립된 중재자를 통한 무효화 및 피해의 정도를 사전에 결정 - 보상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이행 회원국이 보상 패키지를 제시하는 방식을 선택 ○ 관세양허로부터 운송중인 제품 제외 - 교역 관세양허의 철회는 금지관세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운송중인 품목에 대해서는 제외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합 ○ DSB의 권한부여 이후 양허 철회 및 기타 의무의 변동에 관한 사항 - DSB의 양허 철회 권한에 따른 양허 철회 리스트를 회원국이 일방적으로 수정하는 권한을 보유하지 못하는 것을 명백히 하는 조항을 신설	

일 자	주 요 제 안	비 고
	○ DSB 권한부여후 양허철회 및 기타 의무의 종결 - 현행규정에는 A회원국이 DSB로부터 양허 철회권한을 부여 받은 후 B국이 DSB의 권고 및 판결을 이행하는 경우에 대한 명문규정이 결여된 상태임 - 따라서 권고 및 판결의 이행에 대한 패널의 신속화를 위한 규정이 필요 □ 분쟁해결기구의 투명성 - 현재 국제사법기관중 재판절차를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는 기관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패널 및 상소기구의 진행절차를 일반에게 공개 □ 비정부 기구의 의견제시 - 현재 DSU의 규정에는 비정부 민간 기구의 의견제시권이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상소기구의 DSU 해석에 따라 사안별로 의견제시권을 인정 - 따라서 비정부 민간기구의 의견제시 및 시점을 명문화하는 노력이 필요 □ 기타 행정에 관한 사항 제안	미국도 제안 미국도 제안